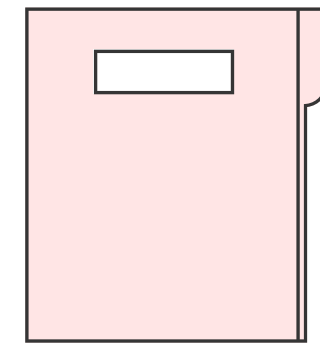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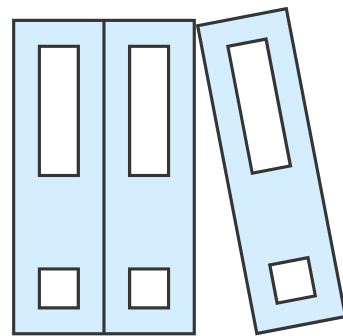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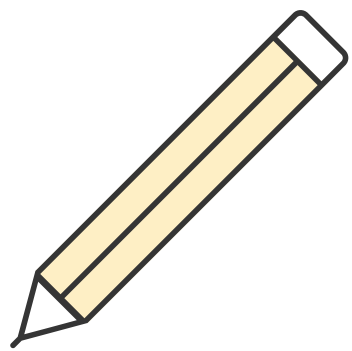


현장실습학기제 (학기제/계절제 공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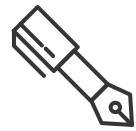
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안내

현행 운영규정 반영



목 차

1



현장실습
학기제/계절제
운영 안내

2



제출서류
안내

3



기업담당자
제출서류

4



책임 교수
제출서류

5



운영규정
개편 안내

6



현장실습
진행절차 안내

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유형 안내

1

학기제 표준단기현장실습

구. 국내학기제인턴십
12주 이상 운영
12학점 인정
12주 총 480시간 기준

2

학기제 표준장기현장실습

구. 국내학기제인턴십
15주 이상 운영
15학점 인정
15주 총 600시간 기준

3

학기제 자율현장실습

12주 이상 운영
12학점 인정
운영계획서 및 유형별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
센터 사전 확인 후 운영 가능

공동 운영기준

- 재학생 중 4학기 이상 이수한 자
- 직전 학기 평점평균 1.50 이상 또는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 1.50 이상인 자
- 학기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필수

- 산재보험 가입 필수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
- RISE 사업비 지원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하여 적용

* 중도포기 시 학기제는 10주 미만 미이수(F), 10주 이상 15주 미만 7학점 인정

계절제 현장실습 유형 안내

계절제

표준단기현장실습

방학 중 운영
4주 / 3학점 인정
표준 기준 적용
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적용
- 산재보험 가입 필수
-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

표준장기현장실습

방학 중 운영
8주 / 6학점
표준 기준 적용
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적용
- 산재보험 가입 필수
-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

자율단기현장실습

방학 중 운영
4주 / 3학점
센터 사전 확인

-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적용
- 운영계획서 기준에 따라 운영
- 센터 신청 및 확인 후 운영 가능

자율장기현장실습

방학 중 운영
8주 / 6학점
센터 사전 확인

-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적용
- 운영계획서 기준에 따라 운영
- 센터 신청 및 확인 후 운영 가능

재학생 중 4학기 이상 이수한 자
직전 학기 평점평균 1.50 이상 또는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 1.50 이상인 자
계절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필수

※ 중도포기 시 계절제는 학점 인정 불가

제출서류 안내

시작 전

사전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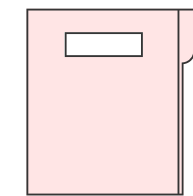


현장실습 시작 전,
학과에서 학생 및 실습기관
확인 후 제출

신청서
개인정보동의서
재학증명서 / 성적증명서
협약서
사전직무교육 이수증

종료 후

결과 제출서류



현장실습 종료 후,
학생·기업담당자·담당교수
작성 서류 취합 제출

주간보고서 / 종합보고서
출석부 / 평가표
현장방문지도보고서
성적평가조서
현장실습 수료증명서

기업담당자 제출서류



- 기업담당자 작성 및 서명 필수
- 출석부를 통해 실습기간 및 출석일수 확인
- 평가표를 통해 학생 실습태도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
- 유형별 운영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자율현장실습은 센터 사전 확인 후 운영

■ 평가 대상 학생 정보			
대학명		학과/전공	
성명		국번	
입학기연월		입학기년	YYYY.MM.DD ~ YYYY.MM.DD

평가표

[illegible]

[조력기법] 자살행위 예방을 위하여, 자살에 대한 이해와 정서지원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.

※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하여, 학생들의 집/담당, 개성별 사물, **주제별** **수업**과 **체험** 등 기초 배운다.























본 기관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사업자지원(Co-op) 정책 중점에 따라
 각 대학의 참여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를 제공합니다.

심사기관명		부서명	
직위		성명 / 직인	(인)

[대학명 기입]대학교 귀중

평가 대상 학생 정보			
학번	이름	학과/전공	성별

■ 資料目

[illegible]

• 연도 : 출발 출발 출발 = 연도 2000

- [illegible]

[illegible]

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

책임교수 제출서류

현장실습 수료증명서

작성대상

학생 요청 시
담당교수가 작성

- 실습기관명 정확히 기재
- 실습기간 및 교과목명 확인

현장실습 성적평가조서

성적평가

책임교수가
최종 성적 평가

- 성적은 이수(P) / 미이수(F)로 작성
- 책임교수 성명 및 서명 필수
- 교과목명 정확히 기재

현장방문지도보고서

현장지도

실습기관
현장방문 후 작성

- 책임교수 기업 현장방문 실시
- 학기제 현장방문지도 2회 필수
- 계절제 현장방문지도 1회 필수
- 실습환경 및 근무상태 평가
-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

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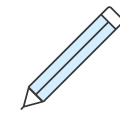
운영규정 개편 안내



개편 전

2026.06 이전

- 국내학기제인턴십 중심 운영
- 계절제 / 학기제 구분 중심 안내
- 학기제 15주 중심 운영
- 재학 중 현장실습 최대 24학점 이수 가능



개편 후

2026.06. 신규 개편

- 교과목 명칭 개편
국내학기제인턴십 → 표준단기·표준장기현장실습
- 학기제 / 계절제 별 표준·자율 유형 구분
- 학기제: 12주·15주 / 계절제: 4주·8주 기준
- 재학 중 현장실습 최대 30학점까지 이수 가능

기존 '국내학기제인턴십' 및 '국내계절제인턴십'은 신규 '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'에 따라 학기제·계절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개편

현장실습 진행절차 안내

1



학생-실습기관 매칭

학생,학과,실습기관 간
실습 가능 여부 확인

2



신청서류 제출

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
재학 및 성적증명서 제출

3



협약 및 보험가입 수강신청 진행

협약서 체결,
사전직무교육 이수 및
교과목 수강신청

4



실습 진행 및 결과보고

현장실습 운영 후
결과보고 서류 취합하여
센터에 공문으로 제출

진행절차 세부 안내

현장실습은 신청서류 제출, 협약 체결, 보험 가입, 사전직무교육 이수 및 교과목 수강신청 후 진행 가능함.

실습 종료 후 학생·기업담당자·교수 작성 서류를 취합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.

※ 현장실습대상자는 가상강좌에 한해 정규학기 최대 6학점, 계절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 수강 가능
단, 실기·실험·실습 포함 교과목은 수강 불가

감사합니다.

